

의안번호	2202426
의 퇴 인	정태호 의원
회 답 일	2024. 08. 13.
추계번호	24A244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8조의5(촉진지구 에 대한 지원)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항 및 제3항 ¹⁾ 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하여야 함(제5항 신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8조의5제5항(촉 진지구에 대한 지원) 신 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함)의 벤처기업,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국가재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촉진지구¹⁾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음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2024년 현재 전국에 28개의 촉진지구가 지정되어 있음

며, 촉진지구로 지정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²⁾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에 따른 부담금³⁾이 감면되는 등의 혜택이 있음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현재 촉진지구에 대한 직접적인 국비 지원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등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국비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촉진지구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규모, 지원 비율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고 이를 추정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므로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계가 어려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상황에 따라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⁴⁾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파악하기가 곤란함

□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변화를 현시점에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 [참고자료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요

[참고자료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현황

2)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3)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4)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게 면세혜택(재산세 35% 감면)이 부여되나, 조례에 따라서 15% 범위내에서 추가감면이 가능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추계세제총괄과	지수현	권아영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3750	zisu37@nabo.go.kr

[참고자료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개요

□ 개요

-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이 높은 지역의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 (2000년~)

* (지정현황) 전국 28개 지정(수도권 11개, 39%)

□ 지정권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

□ 지정요건

- (사후지정) 일정지역에 벤처기업이 집적화된 후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정

① 해당 지구에 있는 벤처기업 수가 중소기업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③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 법 시행령 제11조의20(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 지정 시 혜택

- (금융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 우대 가능, 촉진지구 내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 우선지원 가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

-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등 5개 부담금 면제(「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5)

*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 지원시설 대상 미술장식 의무 등(법 제22조 준용)

- (세제혜택) 촉진지구내 벤처기업에게 각각 면세혜택 부여(「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

① 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50% 감면

- ② 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35% 감면(조례에 따라서 15% 범위내 추가감면 가능)

□ 연혁

- 2000년 대학·연구기관,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이 높은 지역의 집단화·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5)
- 2002년까지 1차 벤처붐의 여파로 전국 24개 지구 지정
- 2004년 제주지구 추가지정
- 2011년 수원지구 추가지정
- 2022년 서울 관악S, 강남지구 추가지정
- 2023.3.1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4항(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정으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증가(37.5% → 최대 50%)

[참고자료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현황

□ 총괄표

서울	부산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광주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계
5	2	1	1	1	1	2	5	2	1	1	1	1	2	1	1	-	28

□ 지정 현황 (2024.6. 기준)

구분	촉진지구명 (운영기관명)	지정 연도	소재지	면적 (km ²)
서울	영등포 (영등포구청)	'00	영등포동, 여의도동, 문래동	2.60
	홍릉, 월곡 (성북구/한국기술벤처재단)	'01	이문동, 월곡동	0.75
	성동 (성동구/성동벤처밸리)	-	성수동, 행당동, 도선동	3.00
	관악S밸리 (관악구청)	'22	낙성대동, 인현동, 행운동, 중앙동, 청룡동, 대학동, 서림동, 삼성동	0.67
	강남구 (강남구청)	'22	역삼동, 도곡동, 삼성동	0.46
부산	대연 (부산정보산업진흥원)	'01	대연동, 남천동, 우동	0.62
	하단 (부산테크노파크)	'01	하단동, 엄궁동	2.22
인천	주안 (미추홀구/인천정보산업진흥원)	'00	주안동, 도화동	0.73
대전	대덕 (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01	구성동, 궁동, 문지동, 방현동, 신성동, 장동, 전민동, 죽동, 가정동, 도룡동, 어은동, 원촌동, 화암동, 용산동, 탑립동, 덕진동	25.55
대구	동대구성서 (대구테크노파크)	'00	신천동, 범어동, 호산동, 호림동	1.29
울산	울산 (울산경제진흥원)	'00	다운동, 무거동	3.90
광주	금남 (광주광역시 동구청)	'01	대인동, 수기동, 호남동	2.48
	첨단 (광주테크노파크)	'02	오룡동, 대촌동, 월출동	3.04
경기	안양 (안양시/안양창조산업진흥원)	'00	안양동,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	3.17
	부천 (부천시/부천산업진흥재단)	'01	상동, 약대동, 삼정동, 오정동	1.00
	안산 (안산시/경기테크노파크)	-	원곡동, 원시동, 초지동	2.83
	성남 (성남시/성남산업진흥원)	-	상대원동, 야탑동, 수내동, 정자동	4.47
	수원 (수원시/경기벤처기업협회)	'11	고색동, 서둔동, 천천동	1.40
강원	춘천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	'01	후평동, 삼천동	0.80
	원주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00	태장동, 흥업면	0.34
충북	오창 (충청북도/충북지식산업진흥원)	'02	오창읍, 옥산면	1.34
충남	아산 (충남테크노파크)	'01	탕정면, 음봉면, 직산면	2.76
전북	전주 (전주시/전주벤처촉진지구발전협의회)	-	팔복동, 장동	0.85
전남	유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목포시 석현동, 옥암동	2.87
경북	포항 (포항테크노파크)	-	지곡동, 효자동	2.13
	구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02	공단동, 신평동	3.61
경남	창원 (경남테크노파크)	-	내서읍	0.79
제주	제주 (제주테크노파크)	'04	이도1동, 이도2동	5.50
계	28개 지구	-	-	81.17